

(주)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집회 소집공고

(주)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(이하 “본건 사채”)에 대한 사채권자집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함을 공고합니다.

◀ 아 래 ▶

1. 일 시 : 2022년 12월 06일 (화요일) 14:00

2. 장 소 : 한국컨퍼런스센터 B1F 컨퍼런스A (서울시 서초구 강남대로 53길 8)

3. 참석대상 : (주)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사채권자

4. 안 건

가. 제1호 의안 (신주인수권부사채의 조건 일부 변경의 건)

- 1) 사채 일부 상환
- 2)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
- 3)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한시적(2022.12.06.~202306.05)삭제
- 4)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

5. 내 용

1) 사채 일부 상환

발행회사의 의무적 조기상환청구권(Call Option)에 관한 사항

-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에 따른 법원 인가 후 상환이 미도래한 전자 등록 금액의 17.5%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.

가) Call Option 행사일 : 사채권자 집회 결의내용 법원인가 후 3영업일 째로 한다.

나) 조기상환 청구방법 : 발행회사는 Call Option 행사일 1영업일 전까지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다) 조기상환 행사금액

- 조기상환 행사금액 : 상환이 미도래한 금액의 17.5%
- 조기상환 관련 이자 : 해당 없음

2) 조기상환 기간의 변경

- 2022년 12월 06일 ~ 2023년 03월 06일까지의 총 2회의 조기상환에 관한 내용(청구기간, 지급일, 상환율)을 삭제(소멸). 사채권자집회 결의의 효력 발생 전에 삭제되는 조기상환 청구권이 행사된 경우 또는 그 조기상환 지급일이 도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(즉 동일하게 소멸하며 지연이자, 기한이익상실 불발생으로 취급, 그리고 이에 관하여 사채권자의 사채관리회사 등에 대한 서면통지가 필요한 경우 그 서면통지 권한을 발행회사에 위임). 다만 9회~10회의 조기상환과 만기상환에 대한 지급일과 상환율은 변동없음.

구분	조기상환 청구기간		조기상환 지급일	조기상환율	변경 내역
	FROM	TO			
7차	2022년 10월 07일	2022년 11월 06일	2022년 12월 06일	106.3413%→ 109.9480%	삭제
8차	2023년 01월 05일	2023년 02월 04일	2023년 03월 06일	106.9047%→ 111.0475%	삭제
9차	2023년 04월 07일	2023년 05월 07일	2023년 06월 06일	107.4737%→ 112.1580%	유지
10차	2023년 07월 08일	2023년 08월 07일	2023년 09월 06일	108.0484%→ 113.2796%	유지

3) 기한이익상실 사유 일부 한시적(2022.12.06.~2023.06.05)삭제

- 기한이익상실 사유 중 “발행회사가 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을 한 경우” 및 “발행회사 이외의 제3자가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고 발행회사가 이에 동의하거나 위 제3자에 의한 해당 신청이 있는 후 10일 이내에 그 신청이 취하되거나 법원의 기각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경우”를 삭제함.

4) 중도상환 조건 등 신설

- 발행회사는 아래의 ① 또는 ②의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각 조건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본건 사채의 원리금을 중도상환 한다.
 - ① 현재 진행중인 발행회사가 원고인 양수금 소송(사건번호: 대법원 2022다291795)에서 피고가 제기한 상고가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고 발행회사가 판결문상 인용된 채권을 집행(임의변제 수령 포함)한 경우, **발행회사는 즉시 그 집행한 채권 전액을 본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한다.** 단, 본문의 조건 성취 또는 그에 따른 원리금 상환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본문은 적용하지 않으며, 이 경우 회생절차에서 인가된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다.
 - ② 발행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회생절차에서 본건 사채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생계획안이 인가된 경우 발행회사는 그에 따라 사채권자에게 원리금을 상환한다.
- 제3자배정 유상증자가 이루어지고 대금이 회사에 납입된 경우 발행회사는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원금을 일시 상환한다. 단, 본건 사채의 잔존 채무액 중 2022. 12. 6.까지 발생한 이자 부분에 해당하는 1,882,208,147원에 대해서는 사채권자들이 이를 위 제3자배정 유상증자 내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출자전환 하기로 하며, 위 2022. 12. 6. 후에 발생하는 이자는 면제하기로 한다. 출자전환은 보유채권 비율로 진행한다.

6. 소 집 자 : (주)뉴로스

7. 참고사항

- 1) 사채권자께서는 집회 당일 다음의 서면을 반드시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◎ 직접행사
 -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 - ② 신분증
 - 대표이사가 참석하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부사항전부증명서와 대표이사 신분증
 - ③ 인감
 -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공증위임장 작성 시 필요
 - ④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 -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
- ◎ 대리행사
 - ① 전자등록증명서를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공탁서 원본
 - ② 인감 날인된 출석 및 의결권 행사 위임장
 - ③ 인감 날인된 공증위임장
 - 사채권자집회 의사록 공증을 위한 것
 - ④ 인감증명서 (최근 3개월 이내)
 - 법인은 법인인감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
 - ⑤ 대리인 신분증

- 2) 사채권자는 집회 1주간 전인 2022년 11월 28일까지 상법 제 492조 제2항에 따라 해당 전자등록증명서를 법원에 공탁하여야 사채권자집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3) 사채권자소집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당사 홈페이지(<http://www.neuros.com/>)를 참조하시기 바라며, 위 집회에서 결의된 사항은 법원의 인가 후 본건 사채를 보유하고 계신 모든 사채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 단, 상법 제49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 전원이 동의한 결의는 법원의 인가 없이도 바로 그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.
- 4) 사채권자집회결의에 대한 법원의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이 있는 경우 당사가 그 사실을 공고합니다.
- 5) 공탁절차 및 서면 의결권 행사와 관련된 사항은 (주)뉴로스 제11회 무보증 신주인수권부사채 사채권자 집회 안내문 및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6) 관련 문의사항은 (주)뉴로스 재무기획팀 (Tel.:042-865-745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- 7) 당일 집회장소의 주차가 불가할 수 있으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주시기 바랍니다.

회차	개최일자	사채관리회사	발행회사
제11회	2022년 12월 06일	케이프투자증권(주)	(주)뉴로스

2022년 11월 28일

(주)뉴로스 대표이사 김승우